

날짜	2017.08.23.
작성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① 조사대상 범위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2017.8.1.부터 2017.8.21.까지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의 적용대상 기관 전라남도청 각 부서,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용대상 : 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적용 제외

-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 (공공근로) 취로사업 성격의 임시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 국비(기금)사업으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 받는 근로자 등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사전에 적용대상 기관에 2017.7.3.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한 생활임금 수혜자 518명이었는바, 이 가운데 일시적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근로자수 및 신규 채용된 근로자수에 따른 변동이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과학원 등)에 조사 시기에 따라 인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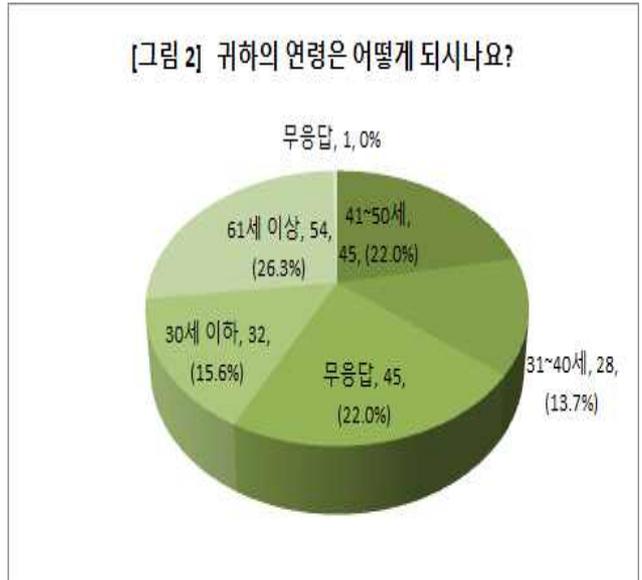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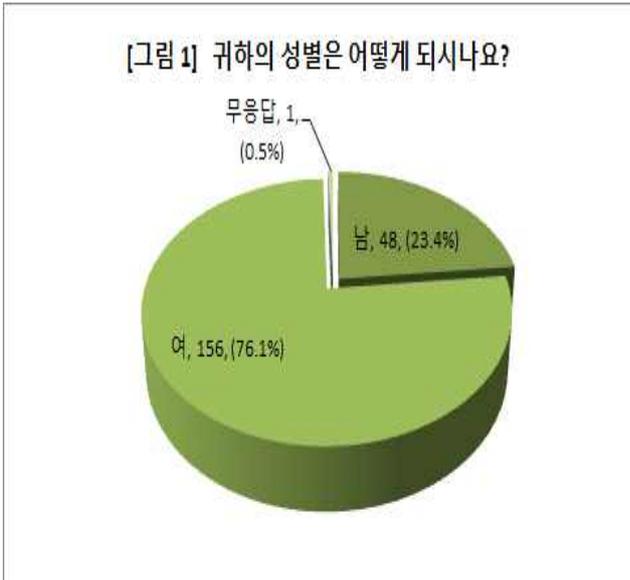
- 이를 고려하여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기관별 서면 응답에 따른 생활임금 수혜자 518명 가운데 39.6%에 해당하는 20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②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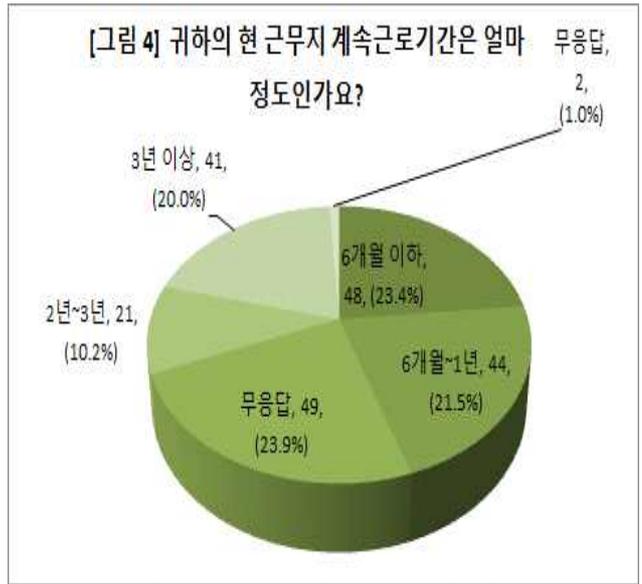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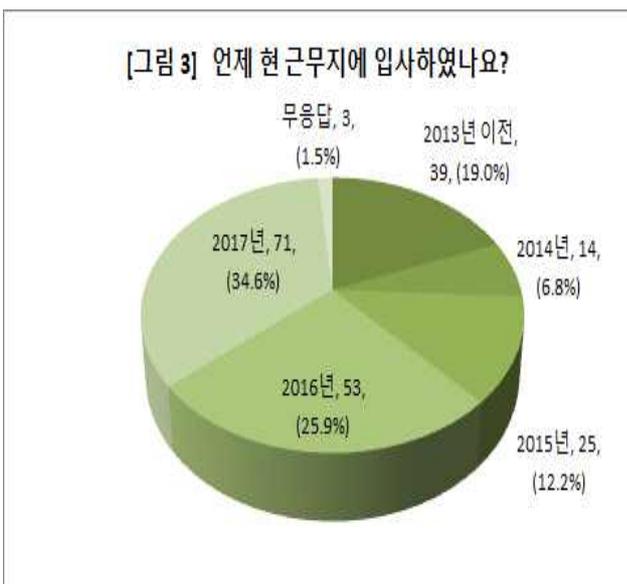
(1) 일자리 및 임금의 가계소득 차지 비중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 가운데 여성근로자는 76.1%(156명)로 집계되었고 남성근로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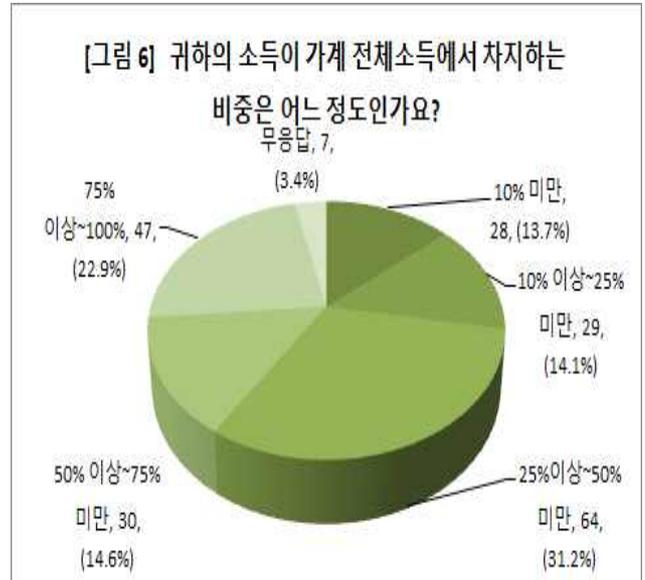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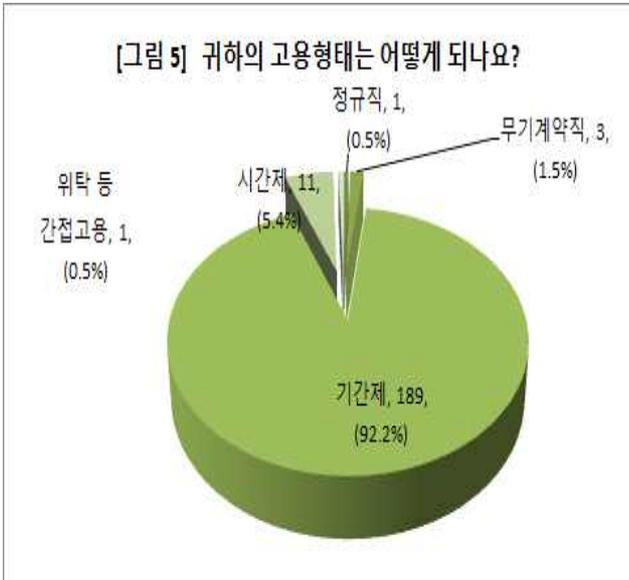
23.4%(48명)로 집계되었으며, 연령은 61세 이상이 26.3%(54명)로 가장 높았고 41~50세의 비율이 22.0%(45명)로 그 뒤를 이은 후 30세 이하가 15.6%(30세 이하) · 31세~40세가 13.7%(28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 응답자들의 입사시점 및 해당 사업장(기관)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입사시점은 금년인 2017년이 34.6%(71명)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의 경우 25.9%(53명)를 차지한 반면 2013년 이전이 19.0%(39명)로 낮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2015년은 12.2%(25명), 2014년은 6.8%(14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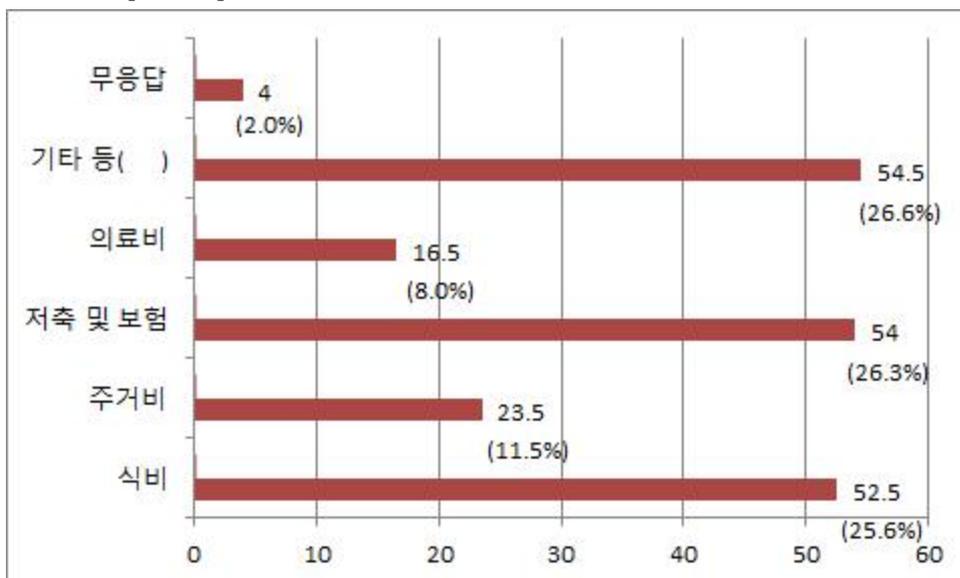


○ 한편, 현 근무지 계속근로기간은 6개월 이하가 23.4%(48명)로 나타났고 6개월~1년이 21.5%(44명), 3년 이상이 20.0%(41명), 2년~3년이 10.2%(21명)으로 나타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를 정한 경우’ 등 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을 근로자가 총 30.2%(62명)로 높게 집계되었다.



- 다음으로 조사대상 근로자들에게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92.2%(18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5.4%(11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은 1.5%(3명), 정규직은 0.5%(1명)로 집계되었고, 위탁 등 간접고용 종사자는 0.5%(1명)로 나타났다.
- 이와 더불어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이 가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질문에서는 25% 이상 내지 50% 미만이 31.2%(64명)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75% 이상 내지 1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22.9%(47명)로 그 뒤를 이었고 50% 이상 내지 75% 미만이 14.6%(30명)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25% 미만은 총 57명(27.8%)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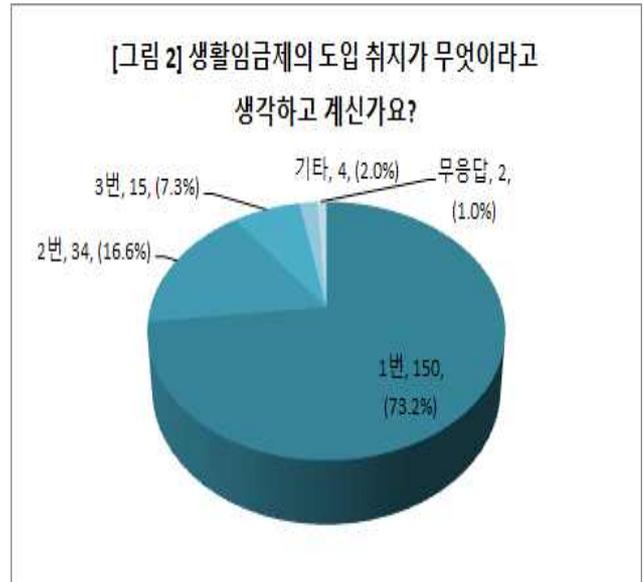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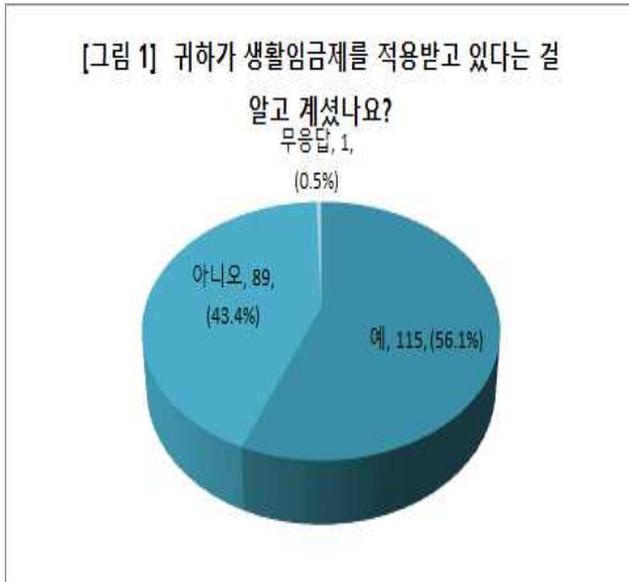
[그림 7]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어떤 지출이 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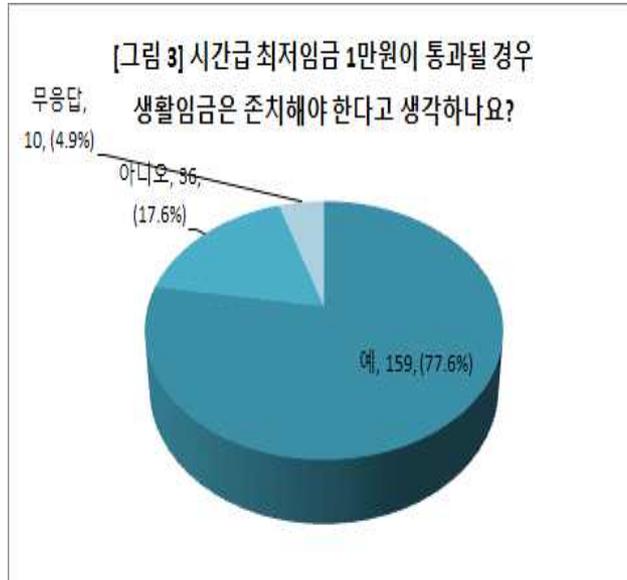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어떤 지출이 늘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동시에 두 가지 항목을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1명을 0.5명으로 분산하여 집계한 결과 기타 등이

26.6%(54.5명)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생활비’를 작성한 근로자가 3명, ‘교육비’를 작성한 근로자가 2명, ‘자녀학원비’·‘여가’를 작성한 근로자가 각각 1명으로 확인되었다.

(2) 생활임금제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근로자들에게 스스로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예.” 라는 응답은 56.1%(115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바 생활임금제 적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다음으로 생활임금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1번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라는 응답이 73.2%(150명)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2번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려우니 적절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라는 응답이 16.6%(34명)로 나타났으며 3번에 해당하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라는 응답이 7.3%(15명)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항목에는 “모르겠다.” 는 응답 1명 외에 3명은 별도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출되기도 하였던 “최저임금 1만원” 이 구현될 경우 생활임금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예.”)은 77.6%(159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아니오.”)은 17.6%(3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무응답은 4.9%(10명)으로 집계되었다.



○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생활임금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이를 도표로 정리하자면 아래 [도표 1]에 기술된 바와 같다.

[도표 1] 시간급 최저임금 1만원이 통과되어도 생활임금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긍정이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의미가 없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계속 오르는 물가나 가계소득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34	21.4%
	임금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이 변하기 때문에	9	5.7%
	최저임금제보다 생활임금제가 근로자 복지를 더 많이 고려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	1	0.6%
	정규직화가 어려우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1	0.6%
	더 인간다운 삶 보장	5	3.1%
	안정성, 기준은 필요한 듯	1	0.6%
	근로자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6%
	근무환경과 조건 개선을 위해	1	0.6%
	공공부문의 근무조건 보장	1	0.6%
	실생활과의 괴리를 좁힌다	1	0.6%
	타 국가에 비교할 때 GDP에 비례하여 임금부분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1	0.6%

	비정규직이라 고용보장이 안 되므로(연속근무가 안 되므로)	3	1.9%
	더 나은 삶과 소비의 상승으로 경제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가상승	1	0.6%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이 기간제나 대체인력의 근무의 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 생활임금을 지속시켜 근무자의 삶의 여유를 (능력개발자금) 계속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	0.6%
	무응답	98	61.6%
	소계	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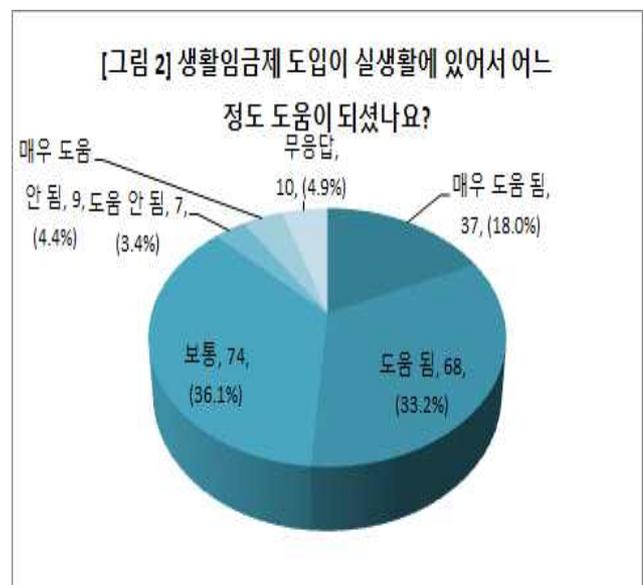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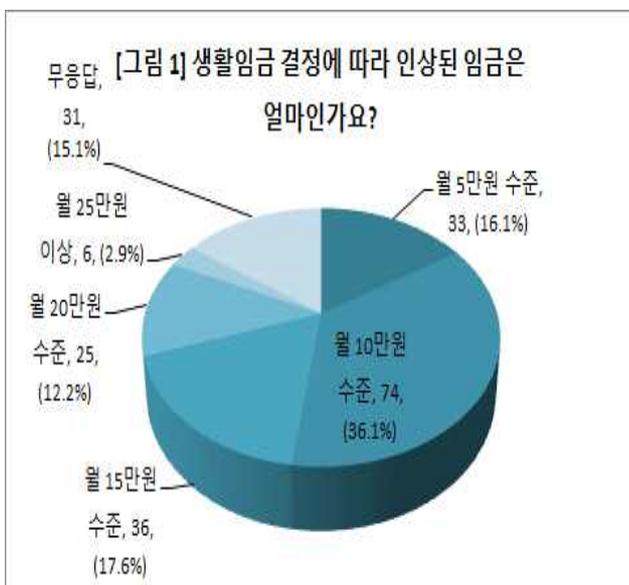
○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생활임금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도표 2]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도표 2] 시간급 최저임금 1만원이 통과되면 생활임금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부정이유	사장들이 부담감을 가져 직원을 쓰지 않으려 할 것 같음	1	2.9%
	시간당 더 많이 받기 때문	1	2.9%
	생활임금이 현재 피부로 닿을 정도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1	2.9%
	최저1만원 실현 시 충분	2	5.9%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매우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면 살만할 것 같다.	1	2.9%
	생활임금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1	2.9%
	최저임금 1만원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물가를 적용하여 높게 책정한 것이라 생각함. 민간부문과 통합이 아닌 공공부문만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1	2.9%
	일반 기업이 비용부담이 커서 운영이 힘들 수 있으므로	1	2.9%
	인건비 만족	1	2.9%
	무응답	24	70.6%
	소계	34	100.0%

(3) 생활임금제 만족도 및 개선 희망사항

○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제 만족도 및 개선 희망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항목으로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월 10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36.1%(74명)로 가장 높았고 월 15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17.6%(36명)로 나타났으며 월 5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16.1%(33명)로 집계되었고 월 20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12.2%(25명)로 나타났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시간급을 2017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했을 때 6,470원×209시간=1,352,230원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산정했을 때 7,688원×209시간=1,606,790원(원 단위 절사에 따라) 산출되는 바, 기존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아 온 전라남도 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의 적용에 따라 실제로 상승되는 월급의 인상액은 257,560원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대비되는데 이는 주 40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점에 따라 발생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생활임금제 도입이 실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3.2%(68명)로 집계되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6.1%(74명), 매우 도움 됨이라는 응답은 18.0%(37명), 매우 도움 안 됨이라는 응답은 4.4%(9명), 도움 안 됨이라는 응답은 3.4%(7명)으로 확인되어 매우 도움 됨을 5점으로, 도움 됨은 4점으로, 보통은 3점으로, 도움 안 됨은 2점으로, 매우 도움 안 됨을 1점으로 상정하면서 무응답은 산출 범위에서 제외해 5점을 만점으로 해 산술적으로 산정한 결과 3.6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보통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척도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활임금 만족도에 대한 이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다음으로 생활임금 인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순위에 따라 달리 해 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청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별로 상이한 내용을 명시했지만 빈도수에 따라 산정하되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한 결과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업무능률 향상-업무만족도 증가-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대외적 이미지 향상-자존감 회복-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응답내역은 하단 이하의 [도표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도표 3] 생활임금 인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순위에 따라 순서를 달리해 응답한 내역

구분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첫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53	25.9%
	업무능률 향상	16	7.8%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25	12.2%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47	22.9%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15	7.3%
	대외적 이미지 향상	11	5.4%
	자존감 회복	7	3.4%
	업무만족도 증가	13	6.3%
	무응답	18	8.8%
	계	205	100.0%
두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33	16.1%
	업무능률 향상	27	13.2%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37	18.0%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22	10.7%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24	11.7%
	대외적 이미지 향상	8	3.9%
	자존감 회복	16	7.8%
	업무만족도 증가	14	6.8%
	무응답	24	11.7%
계	205	100.0%	
세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31	15.1%
	업무능률 향상	37	18.0%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30	14.6%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1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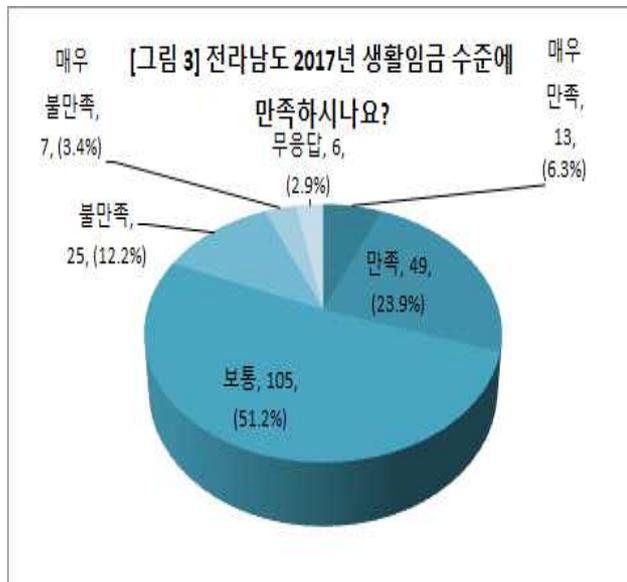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13	6.3%
	대외적 이미지 향상	14	6.8%
	자존감 회복	17	8.3%
	업무만족도 증가	25	12.2%
	무응답	26	12.7%
	계	205	100.0%
네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30	14.6%
	업무능률 향상	34	16.6%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23	11.2%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13	6.3%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19	9.3%
	대외적 이미지 향상	12	5.9%
	자존감 회복	16	7.8%
	업무만족도 증가	31	15.1%
	무응답	27	13.2%
	계	205	100.0%
다섯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13	6.3%
	업무능률 향상	28	13.7%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26	12.7%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13	6.3%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28	13.7%
	대외적 이미지 향상	23	11.2%
	자존감 회복	23	11.2%
	업무만족도 증가	24	11.7%
	무응답	27	13.2%
	계	205	100.0%
여섯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9	4.4%
	업무능률 향상	15	7.3%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22	10.7%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14	6.8%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23	11.2%
	대외적 이미지 향상	39	19.0%
	자존감 회복	37	18.0%

	업무만족도 증가	18	8.8%
	무응답	28	13.7%
	계	205	100.0%
일곱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7	3.4%
	업무능률 향상	16	7.8%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9	4.4%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26	12.7%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33	16.1%
	대외적 이미지 향상	22	10.7%
	자존감 회복	38	18.5%
	업무만족도 증가	24	11.7%
	무응답	30	14.6%
	계	205	100.0%
여덟번째 항목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	9	4.4%
	업무능률 향상	6	2.9%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6	2.9%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28	13.7%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적립 기회 취득	25	12.2%
	대외적 이미지 향상	45	22.0%
	자존감 회복	24	11.7%
	업무만족도 증가	28	13.7%
	무응답	34	16.6%
	계	205	100.0%

○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2017년 생활임금 수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51.2%(105명)은 보통이라고 답했고 만족은 23.9%(49명), 불만족은 12.2%(25명), 매우 만족은 6.3%(13명), 매우 불만족은 3.4%(7명)으로 집계되었다. 매우 만족을 5점, 만족을 4점, 보통을 3점, 불만족을 2점,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산정하였고 무응답을 제외해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을 때 약 3.2점으로 산정되어 보통보다 아주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고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적당한 수준”, “생활에 필요한 월급을 통해 근무 후 자기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좋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생활임금(월급 1,606,790원)이 오르니까 적금시

키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 기재되어 있었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최저생계유지 비용으로서 적당하기 때문”, “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더 나은 근무조건”, “전보다 월급이 올라가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기 때문”, “일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의 지급에 대해 만족하기는 하지만 나가는 지출에 대한 비용이 남다르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함.”, “이 나이에 근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 “최저임금을 받다가 생활임금을 받으니 수입이 늘어 문화생활 등 심적으로 안정됨”, “있는 줄 몰라서 계약할 때 듣게 되어 좋았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었다.



○ 한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도표 4]에 기재된 바와 같다.

[도표 4] 전라남도 2017년 생활임금 만족도 수준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유

응답내용	응답이유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도 내고 저축도 하고 살 돈도 있어서 ○ 현재의 물가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은 앞으로 인상되기를 바람(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틀 마련이 우선) ○ 본인 기준 생활하기에 빠듯한 금액 ○ 적당한 것 같다 ○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음 ○ 의료보험에 연금에 실질적으로 수령할 금액은 적음 ○ 생활임금이라고 하지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님 ○ 더 나은 복지가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수준 향상에는 그저 그렇다

- 미래를 보장할 순 없지만 현재 생활은 유지 가능한 수준이므로
- 생활임금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안정이 더 시급함
-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 걱정하다 생각하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집 근처로 직장을 못 잡아 집세내고 하면 안 남음
- 물가가 비싸서 시간급이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많은 인상이 아니어서
- 주어진 업무에 대한 만족이나 자존감의 향상에 관련한 부분에서 임금의 수준은 만족이 없을 듯
- 조금 더 인상되어도 좋을 것 같다
- 많이 올랐는지 별 느낌이 없어서
- 일급의 기준이므로 월당 일수가 적을 경우 임금이 더 줄어든다.
- 만족하지 못함
- 올해(2017년)부터 근무하여 정확한 비교 및 판단이 불가능함
-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출액 또한 상승했으므로
- 물가상승 등 매월 일정 소비액 증가로
- 물가가 올랐음
-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 급여가 올라간 만큼 4대 보험, 세금이 증가하며 실제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생활에 보탬이 되어서
- 근무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 시급이 적다고 판단
- 월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소비되므로
- 많이 남지도 않고 많이 부족하지도 않아서 보통 수준
-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선에 아직 미치지 못함
- 광주 전남지역의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므로 이 정도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다른 데 보다는 많이 주므로 괜찮지만 소비자물가가 오르므로 그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른 데보다 일이 힘들지 않고 많이 주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므로 그에 비례해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 걱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물가상승 대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
- 시간급 7688원은 경제생활에 미흡
- 근무일수 조정 때문에
-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 기본적인 주거, 생활 부분 해결하기에 부족함
-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만족수준보다는 보통에 준함

- 아울러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로는 “생활하기에 적음”, “연구원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도 위험하고 약품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감안한다면 현재의 생활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의 강도가 월등히 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개선을 원합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너무 적다”, “최저시급이 너무 낮아 생활임금이 높다는 생각을 못함”, “전반적인 생활비의 상승에 대비하여 금전의 가치하락 폭이 커짐으로 생기는 지속적인 저임금의 지속”,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생각”, “치솟는 물가에 비해 부족하다”, “가계소비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급액이 1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은 자존감 상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전체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로는 “4대보험비 내고 고정 지출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적기 때문에”,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월세내고 뭐하면 돈이 사라짐”, “생활비 부족, 점심제공”, “물가 상승으로 지출액이 증가해서”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생활임금제와 관련해 느낀 점, 개선할 점, 보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한 결과 명시된 내용은 [도표 5]에 기재된 바와 같다.

[도표 5] 생활임금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느낀 점과 개선점,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

응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의 경우 일당지급이 아닌 월급제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단순한 임금인상을 떠나서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양한 기관에도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생활임금제는 각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데 그로 인해 시도별로 차이가 생기므로 법제도가 되어 시도 차이 없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비정규직이 많은 세상에서 생활임금제라도 있으니 생활에 도움 되어 좋습니다. ○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 간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 ○ 아직은 생활임금제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료 및 노후장기대책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함 ○ 복지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확산되도록 해야 하며 최저임금과 함께 생활임금도 인상해야 한다. ○ 각 기관별로 일의 강도가 다른데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생활임금 차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 실질임금 수준 정도까지는 급여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각각 가정 간에(예: 교육비, 지출빈도 강화, 주거비용 과다지역 거주 등) 격차를 두어 특별한 (체계적인, 구체적인) 지원 요청
- 식비제공
- 생활임금제라는 것은 좋긴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물가나 생활유지비나 적금 등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지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나가는 돈을 조사하고 측정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임금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 생활비 부족, 점심제공
-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공기업은 미리 시행을 해주셔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지만 근로자들은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안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노동에 비해 월급이 적다
-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 근무자에게 생활임금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지가 필요하다
- 월 20만 원 정도 상승된 임금으로 자존감 회복 등
-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아서 다른 계약직보다는 좋지만 계약직보다는 무기(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체감 물가에 맞춰서 생활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물가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생활임금이 상승되면 좋겠다.
- 더 나은 조건에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도자께서 현장에 직접 실사하셔서 조정해 주시길
- 소속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 시간급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임. 그러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계약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복지관련 정책 개선(예: 중식비 지원 등)
- 처음이라서 아직 와 닿지 않으나 생각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 좋습니다.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최저시급을 높임으로서 모든 주민이 여유롭게 살았으면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 집에서 쉬는 달에는 그 한 달의 생활비며, 아이들 학원비가 걱정으로 다가왔는데, 생활임금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숨통이 트여 안정감마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
- 계속 만족합니다.
- 최저임금(1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생활임금제가 인간다운 삶에 큰 도움이 되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도 증가하고 있으니 생활임금제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여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임금제 도입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그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함

- 보수가 오르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겠지요.
- 생활임금제에 만족하지만 임금이 인상되어도 총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에 온전히 한 달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 며칠씩 근무해야 하고, 실 때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생활임금제는 만족하지만 비정규직이라 고용이 불안정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됨
- 근무일수 조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최우선
- 임금제 인상은 좋은데 시간 일수 조정하는 건 싫습니다. 왜냐면 생계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기간제 근무다 보니 매년 계약직이어서 기간제 폐지 및 만60세까지 보장해주면 합니다.
-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기간제 폐지)
- 고용불안으로 인한 업무능력이 무력해질 수 있다. 업무효율성을 위해 고용연계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 소속감 강화, 대외적 이미지 등 해마다 인상되는 임금에 따른 주관적인 의식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폐지.
- 생활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 생활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좀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
- 생활임금이라는 말에 맞게끔 근로자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임금제 제도 자체를 몰랐음

3 결론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포함된 근로자들, 즉 생활임금 고시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의 이익을 향유한 근로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수준과 대비하였을 때 주 40시간을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매월 약 26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①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아 왔는지 여부 ② 생활임금 제도 적용에 따라 발생한 임금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명확히 인지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활임금 제도의 성격 및 취지, 전라남도 내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과정, 생활임금 수준의 결정 내역에 대해 도청 및 생활임금위원회 차원의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둘째, 수 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이 구현된다 할지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제도는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77.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바, 그 이유로 복수의 근로자들이 응답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가 인상될 것”이며, “물가나

가계소득을 감안한 생활임금 제도는 존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응답에는 현실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의욕 감소 및 소속감 강화, 업무능률 향상, 업무만족도 증가 등을 발생케 하는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을 단기간에 중단하는 것은 종전에 야기한 긍정적 효과에 대비되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셋째,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정했을 때 3.2으로 보통보다 아주 약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활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전라남도 내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생계비를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되, 도내 동종·유사 직종에 근로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그에 비교·교량 하여 전라남도 생활임금 제도가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적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만족도와 의욕 향상을 구현케 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